

#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54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청소년 기본법을 반영하여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군 간 교류활동 및 협력을 위한 위원회 명칭 통일
- 구성 및 운영 방식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재정비

## 주요내용

-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
- 위원회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(안 제13조)
- 위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 소집을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로 변경(안 제16조)
-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 출석 조항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 위원회에 참석으로 변경(안 제17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붙임5 (의견있음)

- 입법예고 : 2020. 10. 19. ~ 11. 9. (22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현행조례 : 붙임6

방침결정문 : 붙임7

## [붙임 1]

#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” 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” 으로, “안산시차세대위원회” 를 “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안산시 차세대위원회” 를 “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안산시차세대위원회” (이하 “차세대위원회”) 를 “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” (이하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) 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차세대위원회” 를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” 을 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“차세대위원회” 를 각각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차세대위원회” 를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차세대위원회를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, “위원 10명 이상의 요구” 를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차세대위원회” 를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에 출석” 을 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석” 으로,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연 창 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팀장 이 희 자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한 준 (행정 3455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<u>청소년중심의</u>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<u>안산시차세대위원회</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제3장 <u>안산시 차세대위원회</u></p> <p>제11조(설치)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<u>안산시차세대위원회</u>(이하 “<u>차세대위원회</u>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12조(기능) <u>차세대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3. (생략)</p> <p>제13조(구성) ① <u>차세대위원회</u>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<u>차세대위원회</u>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,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제3장 <u>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</u></p> <p>제11조(설치) ----- ----- -----<u>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<u>(이하 “청소년참여위원회”</u>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기능) 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구성) ①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4조(임기)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 (생략)

제16조(회의)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청소년참여위원회-----  
-----.

제14조(임기) 청소년참여위원회 ---  
-----  
-----.

제1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회의) ① 청소년참여위원회---  
-----  
-----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---  
-----.

② 청소년참여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.

제17조(수당 등)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석-----  
범위-----  
-----.

#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540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. 1. 28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‘청소년참여위원회’ 구성 위원수를 적정규모로 조정 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0명으로 수정(안 제13조제1항)

##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1항 중 “25명” 을 “20명” 으로 한다.

##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3조(구성) ① <u>차세대위원회</u>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차세대위원회</u>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,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<u>차세대위원회</u>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13조(구성) ① 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-----</p> <p>② 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-----</p> <p>③ 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-----</p>	<p>제13조(구성) ① <u>청소년참여위원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-----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